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 1. 제출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18. 08. 23.
- 회부일 : 2018. 08. 27. (의안번호 : 18-60)

### 2. 제정이유

-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안 제1조 ~ 안 제3조 )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공익신고의 방법 등 (안 제4조 ~ 안 제10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 (안 제11조 ~ 안 제16조)
-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안 제17조 ~ 안 제18조)
- 민간협력 및 표창의 수여 등 (안 제19조 ~ 안 제22조)

#### 4.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난 4월 17일 일부개정 되어 금년 10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미비했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공익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민간협력 및 표창의 수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공익제보는 최근 복잡·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공직사회 부패 및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문제를 고발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를 권장하고 보호 해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실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하다고 할 것임.

특히 제6조 비실명 대리신고 방법 신설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게 명시 내용은 용기 있는 구성원이 공익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국가기관, 기업, 단체 등 투명한 사회로 발전 될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등에 따른 공익신고제도의 운영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깨끗한 지역사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보상금 지급소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첨부자료 】**

- 1) 타구 조례 제정 현황
- 2) 관계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타구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	규 칙	규 정	미운영
	5개구	8개구	11개구	1개구
자치구 (25개)	구로, 중랑, 성동 성북, 영등포	강남,강동, 동작,서초, 송파,은평, 종로,중구	강북,강서, 관악,금천,노원, 도봉,동대문,마포, 서대문,양천,용산,	광진

##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23호, 2017. 10. 31.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4조(위원회 운영)제5항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수당, 공익신고 홍보비, 대리 변호사 운영비 등 공익신고 처리 및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이 10,020천원임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감사담당관 정임영
연 락 처	02-3153-8183